

10.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8월 28일
- 발 의 자 : 김태원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성태 의원, 김지만 의원,
배지숙 의원, 윤기배 의원, 이진련 의원, 이태손 의원,
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일
- 상정일자 :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9월 11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태원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 조례에 보건복지부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에 따른 마약류·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이 되겠음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(안 제명)
-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(안 제6조)
-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2조)
-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 규정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마약류·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추진을 위한 조치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 수립과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사업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사업의 위탁과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.
- 안 제16조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과 치료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마약없이 깨끗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, 마약류·약물 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,
- 그간 대구시에는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, 마약류 퇴치 캠페인, 중독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보건복지부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치료보호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하고, 동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대구·경북의 마약류 사범(19년말 기준)은 1,193명(전국대비 7.4%)으로 적지않은 분포임. 늘어나는 마약사범도 문제지만 재범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게 나타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(대검찰청 자료, 단위: 명)

연도 \ 마약류	합계	마 약	향 정	대 마	비고(증감률)
2017	14,123	1,475	10,921	1,727	- 0.6
2018	12,613	1,467	9,613	1,533	- 10.7
2019	16,044	1,804	11,611	2,629	27.2

* 대구·경북 마약류 사범(2019년 말 기준) : 1,193명(전국 대비 7.4%)

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중독자를 치료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또한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와 같은 오·남용 예방활동에서 추가로 적극적인 치료지원사업과 치료보호를 통해 중독자들이 다시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마약류·약물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시의 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겠으나,
-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위한 연령별, 성별, 직업군 등 각종 항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, 위탁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확실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마약류사범의 증가이유는?	대구·경북의 마약류 사범은 19년말 기준으로 1,193명으로 재범율이 40%정도임. 청소년대상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SNS를 통하거나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하기 용이해 지는 등 여러요건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임.
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할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. 지원 조건이 있는지?	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